

의안번호	제 58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17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최경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8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 의 자 : 최경천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하는 흡연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실태조사(안 제5조)
- 마.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안 제6조)
- 바. 간접흡연 예방(안 제7조)
- 사. 금연구역 표시(안 제8조)
- 아. 홍보(안 제9조)
- 자. 위탁(안 제10조)
- 차.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92호

(2020. 11. 11. ~ 2020. 11. 15.)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이란 학생의 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추진사업 및 방법
  3.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4. 학생 흡연 관련 실태 조사 및 결과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부모의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 등 학교 내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07. 12. 14.]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홍보), 제10조(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홍보), 제10조(위탁)에 따른 비용은 충북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북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